

수수료(제32조제1항 관련)

- 1. 법 제22조에 따른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: 1,000원
- 2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
 - 가. 품질검사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염업조합인 경우
 - 1) 서류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
 - 2) 관능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.

소금의 종류	천일염	정제소금	재제조소금	화학부산물소금	가공소금	함수	수입소금
기준가격 (원/톤)	840	520	520	520	870	160	120

- 3) 정밀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」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
- 나.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인 경우: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3. 천일염인증

구 분	금액(원)	산출명세
현장심사비	300,000	- 심사원 출장비: 150,000원 × 1일 × 2명
시험검사비	500,000	- 분석료: 250,000원 × 2개 시료
인증서 재발급	30,000	

비고

- 1. 다른 공인시험·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제품시험 수수료를 그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.
- 2. 삭제 <2019. 6. 10.>